

자격이 되는 의료 보험 가입 방법

귀하의 이민 신분 정보는 엄격히 보호됩니다



본인 및 가족의 건강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세요.

미국 전역에서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Health Insurance Marketplace)를 통해 건강보험 옵션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급보험료 납부에 도움이 되는 재정 보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살고 계시는 주의 Medicaid나 CHIP 가입여부도 판단됩니다.

미국 시민권자, 미국 국민 또는 “합법적으로 거주” 하고 계신 분들은 HealthCare.gov를 통해서 건강보험 신청 시, 재정 보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이민 신분을 가진 분들도 각 주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고 제한된 의료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를 통해 보험 가입 시, 제공하시는 본인과 가족의 모든 개인정보는 엄격히 개인정보 보호방침하에 보호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전국 이민법 센터 (*The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 아시아 태평양 커뮤니티 보건기구협회 (*The Association of Asian Pacific Community Health*), 아시아계 미국인 정의 실현 - Los Angeles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 Los Angeles*), 아시아계 미국인 정의 실현 - AAJC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 AAJC*), 보건정의를 위한 행동 (*Action for Health Justice*), 아시아 및 태평양 도민 미국 보건 포럼 (*Asian & Pacific Islander American Health Forum*), Covered California 등의 이민신분 보호방침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Covered California 건강보험 가입은 신청자와 가족분들의 이민신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을 보장해 드리며, 모든 분들이 염려 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민신분 정보는 보호됩니다

무료로 비밀이 보장되는 지원을 제공하여 가입을 지원하는 HealthCare.gov 공식 지정 등록관(공인 보험 대리인, 공인 가입 상담사, 및 복지 서비스 기관에 있는 카운티 적격성 담당자가)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 신청할 신청자의 이민신분 정보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귀하의 모든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¹ 이민국의 이민법 집행 또는 추방을 위해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² 귀하가 제출하는 모든 정보는 오직 HealthCare.gov를 통한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만 사용됩니다.³

건강보험 가입시, 귀하의 이민신분에 이민 서류상의 정보 (영주권 번호, 노동허가증(EAC) 정보 등)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류 사본을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송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 정보와 서류는 항상 안전하게 엄격히 보호됩니다.

타인을 위해 신청할시 본인의 이민신분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예: 자녀)을 대신해 의료 보험에 가입할 시, 본인의 이민신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⁴ 가입자의 재정 보조 혜택에 대한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기입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보험 보장 신청을 위해 반드시 SSN를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⁵ SSN이 없거나 자격 대상이 안되시는 분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부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⁶ 또한, 귀하가 보험 보장을 받아야 할 경우, 본인이 주 정부에서 SSN을 받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⁷

알맞은 보험 플랜에 가입하세요

귀하의 이민 신분 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신청서에 기재된 이민자 및 서류미비자 가족 분들의 정보는 유출되지 않습니다

의료 보험 보장을 받기 위해 제공하는 정보는 이민법 집행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으며, 가족의 구성원이 서류미비자이거나 임시보호상태(TPS) 또는 추방유예(deferred action)와 같은 임시 보호를 받는 이민자 가족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보가 보호됩니다. 2013년에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보험 보장 자격 판단을 목적으로 확보한 [이민 관련] 정보를 민사상 이민 단속 조치의 근거로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⁸ 즉 신청서에 기록된 모든 정보는 안전하게 비밀로 유지되며 이민 단속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혜택을 받으셔도 본인의 이민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의료 보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의료 보험에 가입하신 분의 이민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 보안은 건강보험료 지불을 위한 재정 보조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공공 보조자”로 낙인이 찍힐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신청시에도 혜택을 받은 기록은 아무 불이익을 끼치지 않습니다.⁹ 다만, Medicaid를 받는 특정 분들은 대한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Medicaid를 통해 기관에서 장기요양혜택을 받는 분들은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¹⁰

유의사항: 본인이나 가족이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DACA) 수혜자인 적격 대상인 경우 등 기타 제한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DACA) 수혜자 분들은 서류 미비자 HealthCare.gov 건강보험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¹¹ 다만, 거주하시는 주와 연소득에 따라, 의료 혜택 프로그램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¹² 일부 저소득 이민자들은 해당 주에서 다른 모든 Medicaid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면, 이민 자격에 상관 없이 응급한 상황을 위한 제한된 Medicaid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¹³

모든 분들을 위해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하니 본인과 가족분들을 위해 정부 의료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보장 옵션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www.HealthCare.gov을 방문하십시오. 이 웹사이트에서, “지역별 지원처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원하시는 언어로 본인의 문의에 답할 수 있는 공인 등록 상담사나 공인 보험 대리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공식 등록 기관의 서비스는 무료이며 본인의 개인정보는 항상 보호됩니다. 또는 전화 (800) 318-2596으로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로 전화하면 영어, 스페인어 및 기타 언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지를 다운받고 싶으시면:

www.coveredca.com/news/PDFs/immigration-fact-sheet-us-kor.pdf

¹ See, e.g.,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of 2010, Pub. L. No. 111-148, § 1414 (2010); 45 C.F.R. 155.260(a)(1)(2014); 42 U.S.C. § 1396a(a)(7)(2012); 26 U.S.C. § 6103(2012).

² Clarification of Existing Practices Related to Certain Health Care Information,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Oct. 25, 2013), available at <http://www.ice.gov/doclib/ero-outreach/pdf/ice-aca-memo.pdf>.

³ 45 C.F.R. § 155.260(a)(1)(2014).

⁴ 45 C.F.R. § 155.310(a)(2)(2014).

⁵ 45 C.F.R. §§ 155.305(f)(6), 155.310(a)(3)(ii)(2014).

⁶ 45 C.F.R. § 155.610(e).

⁷ 42 C.F.R. § 435.910(e).

⁸ ICE Clarification of Existing Practices, *supra*.

⁹ See, e.g., Field Guidance on Deportability and Inadmissibility on Public Charge Ground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Department of Justice, 64 Fed. Reg. 28689, 28692 (May 26, 1999); Public Charge Fact Sheet,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revised Nov. 15, 2013), available at <http://www.uscis.gov/news/fact-sheets/public-charge-fact-sheet>.

¹⁰ *Ibid*.

¹¹ Memorandum from Janet Napolitano, Exercising Prosecutorial Discretion with Respect to Persons Who Came to the United States as Children,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June 15, 2012), available at: <http://www.dhs.gov/xlibrary/assets/s1-exercising-prosecutorial-discretion-individuals-who-came-to-us-as-children.pdf>; 45 CFR §§ 152.2, 155.20, 155.305(a)(1)(2014).

¹²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 Medical Assistance Programs for Immigrants in Various States, available at <http://nilc.org/health.html>.

¹³ 42 C.F.R. § 435.350.